

지방계약법령의 조문별 개정내용 해설

행정안전부 서기관 | 최 두 선



지난해 12월호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4조에 대하여 조문별 해설에 이어서 이번호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조문별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 먼저15조는 조문이 11항 까지 있어 너무 길어 나누어서 설명을 해보기로 한다.

제15조(공사의 입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를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설계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입찰에 관한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입찰 공고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입찰에 관한 서류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07.9.20〉

③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 중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낙찰자가 결정되기 이전이라도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07.9.20〉

④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를 입찰에 부치고자 하는 때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에 미리 현장설명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현장 설명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설명은 공사의 규모에 따라 당해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7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일
 3.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33일
-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에 있어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7.9.20〉

제15조 제1항과 제2항의 의미는 계약담당자가 공사를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와 공종별 물량내역서, 입찰공고문(입찰참가통지서), 입찰유의서, 설계서(도면이나 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 안내서 등)등을 열람하도록 해야 하고 100억원 이상 공사는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에 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턴키나 대안입찰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선정방식을 입찰자들 에게 미리 알려주도록 하고 있다.

공사입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대부분 적격심사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적격심사기준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등에서 이미 공시되어 있으므로 입찰공고에서는 공시되어 있다는 사실만 명시하면 된다고 할 수 있다. 제2항에서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는 의무적으로 나라장터에 입찰에 관한 서류를 공개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100억원 이상 공사가 턴키나 대안 또는 협상에 의한 방식을 제외하고는 내역입찰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3항의 의미는 100억원 미만의 공사는 낙찰자에게 물량내역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여야 하거나 입찰자라도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교부하거나 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100억원 미만의 공사라 하더라도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서를 게재하는 경우 물량내역서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고 입찰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제4항부터 제6항 까지는 공사의 현장설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문이다.

국가계약법령에서는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는 반드시 현장설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계약법령에서는 모든 공사의 현장설명 여부는 발주자가 현장설명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공사의 현장설명은 공사의 내용에 특성이 있거나 입찰자들이 입찰서를 작성할 경우 현장을 알고 입찰에 참가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다. 제5항은 공사의 현장설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사금액별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현장설명할 수 있는 시점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는 입찰공고의 기간을 감안하여 현장설명이 이루어

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물론 긴급 입찰의 경우에는 긴급입찰 공고기간에 맞추어 이를 단축해야 할 것이다.

제6항의 의미는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 공사는 현장설명을 실시한 경우로서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않는 입찰자는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문이다.

-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 입찰시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서에 입찰총액을 기재하게 하되,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입찰금액산출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 한다)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7.9.20)
-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자로 하여금 교부된 설계서 및 입찰자의 새로운 기술·공법·기자재 등(지방자치단체의 설계와 같은 수준 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기자재 등을 말한다) 제안내용에 따라 물량과 단가를 산출하여 기재한 산출내역서와 동내역서의 산출에 관한 기초자료를 직접 작성하여 입찰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07.9.20)
- ⑨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낙찰자로 하여금 제3항에 따라 교부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으로서 제19조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로 하여금 제7항에 따른 산출내역서를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까지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7.9.20)
- ⑩ 장기계속공사(「지방재정법」 제42조에서 규정하는 계속비에 의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총공사를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7.9.20)
- ⑪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7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단가계약 체결을 위한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총액으로 입찰을 실시하되, 계약체결시 총액에 대한 단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07.9.20)

제7항의 의미는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내역입찰을 하도록 하고 있어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나라장터에 게시한 물량 내역서에 입찰자가 산출 내역서를 만들어서 입찰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제8항의 의미는 최저가 낙찰방식으로 입찰을 하는 경우로서 신기술이나 신공법 등에 의하여 절감사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교부한 물량 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내역입찰방식에서 벗어나 교부된 설계서(도면 및 시방서) 및 입찰자의 기술제안내용(신기술 등)에 따라서 입찰자가 직접 산출한 물량과 단가를 기재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를 제출토록 하는 『순수내역입찰 방식』을 담고 있는 조문이다.

동 조항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상공사나 구체적 시행방식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시행여건이 충족되지 못하고 있어 시행을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9항의 경우에는 100억원 미만의 공사는 낙찰자에게 산출내역서를 계약 체결시 제출토록 하되 100억원 이상 공사로서

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않고 입찰서만 제출토록 하여 입찰기간을 단축 하도록 하고 있다.

제10항은 장기공사나 계속비 공사의 경우에 사업비 전체 예산의 확보유무와 관련 없이 공사비 총액을 기준으로 입찰을 실시하고 장기계속 공사의 경우에는 총액으로 입찰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차수계약을 실시하고 계속비 계약의 경우에는 총액으로 입찰을 실시하고 총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 이에 해당한다.

제11항은 시설물의 보수·복구공사에 대하여 단가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입찰자가 총액으로 입찰금액을 표기하되 계약 체결시 단가 산출내역서를 제출토록 입찰방식을 명문화 한 것이다. 이는 공사의 경우 국가계약법령과 달리 단가입찰을 실시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제16조(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등을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입찰에 관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특성상 물품과 용역을 통합발주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 제42조제1항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방법 중에서 계약목적물의 특성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을 선택하여 입찰공고시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⑤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입찰서에 의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단가를 각각 표시하여야 한다.

⑥장기계속계약(「지방재정법」 제42조에서 규정하는 계속비에 의한 제조 등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총제조 물량 등을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게 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2항의 경우에는 용역이나 물품의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이나 교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물품이나 용역의 경우 입찰에 필요한 서류는 과업지시서, 시방서,규격서등 입찰에 필요한 서류를 열람토록 해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입찰공고문에 첨부화일로 올려서 입찰자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3.1억원)이상인 물품이나 용역의 입찰자의 요구가있는 경우에는 이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하므로 입찰공고문에 이를 게시 하는 것이 필요 하다고 본다.

16조 제3항의 경우에는 물품과 용역의 통합발주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가령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전산장비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물품과 용역을 통합발주하면 효율적인 구매나 개발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물품의 구매는 최저가 입찰이 가능하나 용역의 경우 2단계 경쟁입찰을 제외 하고는 최저가 입찰을 할 수 없다. 또한 용역의 경우 적격심사가 금액제한 없이 가능 하나 물품의 경우 고시금액 (3.1억원) 미만의 경우만 가능하다. 따라서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협상계약, 적격심사 ,최저가 입찰, 2단계 경쟁 입찰 중에서 낙찰자 결정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

제5항의 경우에는 물품이나 용역의 경우 단가입찰의 경우에는 단가를 기재하고 총액입찰의 경우에는 총액으로 입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사는 단가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 입찰금액의 총액을 기재하고 단가를 기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제6항의 경우 장계계속계약이나 계속비 계약 방식으로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총 제조 또는 총 물량을 대상으로 입찰을 실시토록 하고 있다.

(시)제17조(다량물품의 입찰) ①다량의 물품을 매각하는 경우의 일반경쟁입찰은 그 매각수량의 범위 안에서 수요자의 매수 희망수량과 그 단가를 입찰하게 할 수 있다.

②다량의 수요물품을 제조 또는 구매하는 경우의 일반경쟁입찰은 그 수요수량의 범위 안에서 공급자가 공급할 희망수량과 그 단가를 입찰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희망수량경쟁입찰 대상의 범위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규칙)제19조(희망수량경쟁입찰의 대상범위)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희망수량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1인의 능력이나 생산시설로는 그 공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다량의 동일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할 경우
2. 1인의 능력으로는 그 매수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다량의 동일물품을 매각할 경우
3. 수인의 공급자 또는 매수자와 분할계약하는 것이 가격·품질 그 밖의 조건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다량의 동일물품을 제조·구매 또는 매각할 경우

(규칙)제20조(희망수량 경쟁입찰의 입찰공고) 희망수량경쟁입찰에 의하는 경우의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이라는 사항
2. 영 제36조 각 호의 사항
3.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수량과 낙찰수량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희망수량경쟁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칙)제21조(2종 이상의 물품에 대한 희망수량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2종이상의 물품에 대하여 희망수량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종류 별로 단가 및 수량에 대하여 입찰을 하게 하여야 한다.

(규칙)제45조(희망수량경쟁입찰의 낙찰자 결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48조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 단가로 입찰한 자의 입찰수량이 동일한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영 제4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최후순위의 낙찰자의 수량이 다른 낙찰자의 수량과 합산하여 수요량 또는 매각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은 이를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규칙)제21조(2종 이상의 물품에 대한 희망수량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2종 이상의 물품에 대하여 희망수량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종류별로 단가 및 수량에 대하여 입찰을 하게 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7조는 자치단체가 다량의 물품을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 단가입찰을 시행하면서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되 여러개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희망수량경쟁입찰을 예로 들면 자치단체가 행사 등을 하면서 하나의 업체가 물품을 전량 공급하기 곤란한 경우 2개업체 이상이 낮은가격의 순서대로 물품을 납품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희망수량 경쟁 입찰은 낙찰자가 여러개 업체가 되므로 낙찰업체 중 가장높은가격으로 낙찰을 받은 업체가 희망수량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수량은 를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처리된다. 2종 이상의 물품에 대하여도 희망수량 경쟁 입찰을 시행할 수 있다.

(영)제18조(2단계 경쟁 등의 입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청소, 경비 등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용역의 계약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미리 적정한 규격 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그 밖에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7.9.20〉

②제1항의 경우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청소, 경비 등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용역의 계약을 제외한다)의 특성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격과 가격 또는 기술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규격입찰 또는 기술 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여야 한다.〈개정 2007.9.20〉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 전에 평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단계 경쟁 입찰은 최저가 입찰방식의 하나이며 최저가를 보완하기 위하여 1단계에서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에 2단계에서 가격입찰을 실시하는 방식중 하나이다. 기술입찰은 발주자가 평가기준을 정하여 입찰자를 평가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을 정하는 경우 객관성 평가와 주관적 평가를 적절하게 배합하여 능력 있는 사업자가 선정되도록 해야 한다.

한편, 2단계 경쟁 입찰은 단순노무용역은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단순노무 용역을 최저가 입찰로 시행하는 경우 근로자들의 임금이 급격하게 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2단계 경쟁 입찰은 1단계 기술(규격)제안서를 받아서 적격자를 선정한 후에 적격자들 간에 최저가 입찰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과 규격입찰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게 하여 규격을 먼저 개봉하게 한 후에 가격을 개봉하는 방식이 있으며 동 방식은 규격의 적격자가 1인 뿐 이더라도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2단계 경쟁 입찰은 규격의 적격자가 1인뿐인 경우에는 유찰이 되어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차이점이 있다. 계약담당자는 규격입찰에 관한 평가기준을 정해야 하는데 이 경우 평가기준은 조달청등 전문기관이나 다른 자치단체의 평가기준 등을 참고하여 적정하게 작성하여야 할 것이다.

(규칙)제23조의2(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의 제외대상) 영 제18조제1항 및 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1. 청소용역
 2. 검침(檢針)용역
 3. 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
 4.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용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용역
- [본조신설 2007.10.5]

상기조문은 2단계경쟁입찰 제외대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문이다. 앞서 설명한바와 같이 청소용역, 검침용역,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 행사용역, 인력지원용역 등이 이에 해당하며 제 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용역은 현재는 정해진 용역이 없다.

- (영) 제19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경쟁 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영 제19조는 재입찰이나 재공고 입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재입찰은 입찰을 실시한 결과 최초로 부친 입찰이 유찰된 경우 다시공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같은 장소에서 입찰에 부치는 제도이나 현재는 대부분 90%이상이 나라장터에 의한 전자입찰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재입찰을 시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 등 이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겠다.

재공고 입찰은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거나 입찰자가 1인 뿐인 입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입찰 등의 경우에는 공고를 다시 하여 입찰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재공고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 공고시 처음입찰 공고내용을 바꿀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입찰 공고내용 중에 과도한 제한으로 인하여 유찰이 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의 내용을 바꾸어 새로운 입찰을 시행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입찰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하겠다.

가령 지역제한으로 입찰하거나 실적제한을 과도하게 하여 유찰이 된 경우에는 실적제한을 완화하거나 지역제한을 풀어 새로운 입찰을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입찰이라고 할 수 있다.

제20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 ①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9호의 제한사항별 제한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7.9.20〉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 30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공사 및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의 경우에는 3억원) 이상인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시공능력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2.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3.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
 4.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는 물품구매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납품 능력
 5.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실적
 6. 추정가격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7.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방법에 의하여 공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기준
 8.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한 물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9.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쟁참가자의 재무상태
-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찰공고에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음은 시행령 제20조에 규정된 제한경쟁입찰에 관하여 알아보기로 하자. 제한경쟁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등 발주청이 가장 선호하는 입찰방식 중 하나로서 지역제한과 실적제한, 업체의 납품능력제한, 신기술에 의한 제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예규에 있는 제한경쟁 입찰의 유형을 살펴보면 아래 표(1)과 같다.

먼저 실적제한을 살펴보자. 실적제한은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종합공사, 3억원 이상인 종합공사 이외의 공사는 발주자의 선택에 따라서 실적제한이 가능하나 위 금액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의 경우에만 실적제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의 종류는 행정안전부 예규『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한경쟁계약 운용요령에서 표(2)와 같이 규정을 하고 있다. 용역은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에 실적제한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물품의 경우에는 특수한 설비나 기술이 필요한 제조구매의 경우에 한하여 실적제한을 하도록 하고 있다. 실적제한의 기본원칙을 알아보자. 우선 실적을 제한하는 경우 당해계약 목적물과 동일한 종류의 실적으로 제한을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동일한 종류의 실적의 범위를 입찰 공고하는 경우에 이를 입찰공고문에서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실적의 제한은 당해 발주규모의 1배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발주공사규모대비 0.7배 이내에서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예규『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한경쟁계약 운용요령에서는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당해공사 규모의 1/3정도로 제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편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실적으로 제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가능한 계약목적 달성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규모나 양으로 우선적으로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금액으로 제한하는 경우 공사의 특성 등을 반영할 수 없고 시차에 따라서 실적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어 객관적인 제한이 이루어 지기 곤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시설공사의 실적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실적인정의 시점을 최근 10년이내의 실적으로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최근10년 이내의 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초일불산입)으로 하여 최근10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실적을 의미한다. 용역이나 물품의 경우 대부분 최근5년이내의 제한이 이루어 지고 있으나 실적제한의 연도를 규제하는 별도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실적을 제한하는 경우 공사는 실적의 제한 내용들이 시설공사 적격심사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적격심사 까지 이를 연계하여 판단해야 한다.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적격심사에서도 최근10년이내의 동일실적으로 실적평가 항목을 평가해야 하며, 실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 최근 3년간의 업종별 실적으로 평가를 하게되므로 적격심사내용이 달라지게 된다.

한편 실적을 제한하는 경우 계약의 특성, 난이도, 경쟁성,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한규모를 정해야 한다.

〈표 1〉 제한경쟁입찰의 유형

제한의 종류	계 약 목적물	제 한 요 건	비 고
① 당해 계약목적물과 동일한 종류의 실적으로 제한	공 사	-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일반공사와 3억원 이상 일반공사 이외의 공사 - 추정가격 30억원(3억원) 미만이라도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별표 1〉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물품·용역	-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 제조 계약 -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	- 당해계약 목적물의 1배 이내(추정가격 50억 미만 공사는 0.7배 이내) - 가능한 규모 또는 물량으로 제한
② 기술의 보유상황으로 제한	공 사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별표 1〉의 30개 공사 참조
	물품·용역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의 제조 또는 용역계약	〈별표 1〉 참조
③ 시공 능력 공시액으로 제한	공 사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일반공사와 3억원 이상 일반공사 이외의 공사	
④ 지역제한	공 사	- 일반공사 : 추정가격 70억원 미만 - 전문공사 : 추정가격 6억원 미만 - 전기·정보통신·소방·기타 : 추정가격 5억원 미만 ※ 혁신도시건설관련공사 : 100억 미만 (전문10억미만)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도내에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 업체로 제한
	물품·용역	- 시·도에 발주하는 경우 : 추정가격 3억원 미만 - 시·군구에서 발주하는 경우 : 추정가격 5억원 미만 - 건설기술용역 : 추정가격 2억원 미만 - 안전진단용역 : 추정가격 1.5억원 미만	물품·용역의 납품현장을 관할하는 시도내에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 업체로 제한
⑤ 설비로 제한	물 품	특수한 설비가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	
⑥ 유자격자 명부에 의한 제한	공 사	시·도지사가 공사를 성질별, 규모별로 유형화하여 제한경쟁기준을 정하고 등록한 그 사업자로 제한	
⑦ 물품의 납품능력	물품의 제조 및 구매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는 경우 일정기준의 능력 요구	
⑧ 중소기업자	,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한 물품의 제조·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제한
⑨ 재무상태	공사·용역 및 물품·기타	- 계약이행의 부실화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 부도 상태에 있거나 파산 등의 상태가 있는자의 배제	

〈표 2〉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1.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공사(시행령 제20조제1항제2호 관련)

①터널을 수반하는 공사 ②활주로공사 ③지하철공사 ④저수·유조 하천공사 또는 수중작업을 수반하는 공사 ⑤댐 축조공사 ⑥취수장, 정수장, 유수지 또는 오수처리장 공사로서 수중 작업을 수반하는 공사 ⑦송·배수관공사 ⑧수중관·사이폰·저수지 또는 제방공사 ⑨매립지등 연약지반에서 파일 또는 우물통공사를 수반하는 공사 ⑩독크 축조공사 ⑪간척(방조제)포함 또는 매립공사 ⑫항만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공사 및 어촌·어항법 제2조제3호 가목·나목의 규정에 의한 어항시설공사 ⑬장대교(길이 100m 이상인 교량을 말한다) 제작 또는 가설공사 ⑭철도 및 철도궤도공사 ⑮정밀한 시공을 요하거나 위험을 수반하는 기계설치공사 ⑯발전·변전·송전 또는 배전설비공사 ⑰전기철도 또는 전차시설공사 ⑱배관·배선·전등 또는 전기기계 설치공사 ⑲신호집중제어 또는 특수제어장치설치공사 ⑳자동신호 또는 연동장치공사 ㉑원형차량 감지기 설치공사 ㉒문화재 보수공사 ㉓차선도색공사 ㉔도로보합제를 사용한 신축이음 및 균열 보수공사 ㉕상수도관 세척갱생공사 ㉖하수도 흡입 준설공사 ㉗심정공사 ㉘산간벽지 등 특수지역에서 시공하여야 하는 군사시설공사 ㉙하천환경정비사업 ㉚ 기타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공사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2. 특수한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시행령 제20조제1항제2호 관련)

- ①스프링공법 또는 철골공법에 의한 공사
- ②피·시공법 등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수공법으로 지정·고시한 공법에 의한 공사

이상으로 실적제한에 관하여 알아보았으며 지역제한과 기술제한 등에 관하여는 다음호에서 계속하기로 한다. ☺

